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법의 개념과 이념 / 1주차 1차시

1. 법의 정의 및 성격

1) 법의 정의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행위준칙인 사회규범이 필요함
-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도덕, 윤리, 종교 등이 있는데, 그중 법은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
 - 행위준칙으로서 법은 사회질서 유지, 공동생활의 안전 보장, 사회정의 실현 등을 위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으로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함

2) 법의 성격

- 강제규범 : 법은 다른 사회규범들(도덕, 종교, 관습 등)과 구별되는 결정적 요소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범
- 문화규범 : 법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가치에 대한 그 사회 합의의 산물
- 행위규범 :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판단 근거가 되는 준칙
- 조직규범 : 법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
- 사회규범 : 법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사회 안정 및 질서 유지 기능 수행
- 재판규범 : 재판할 때 판결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규범

2. 법의 이념

1) 사회정의의 실현

-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음
- 사회정의(social justice)란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이며, 사람들이 응당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상태이자 사회 내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
- 사회정의 구분(아리스토텔레스)
 - ① 일반적 정의
 - 개인권리의 상호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단체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
 -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것
 -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법의 준수 등)
 - ② 평균적 정의
 -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형식적이고 절대적 평등원리로서 교환적 정의 또는 산술적 정의로도 불림
 - 사람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이해득실을 평균화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등가(等價)의 원칙이 적용됨

- 사람들 간의 거래나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 국민연금법의 급여산정공식에서 소득비례부분(B)값을 적용하는 경우가 해당됨

③ 배분적 정의

- 분배적 정의라고도 하며, 전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처지에 맞는 대우를 해주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 배분적 정의는 주로 재분배 기제를 통해 실현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세법상의 누진적인 소득세 등을 들 수 있음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적 안정성이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법이 준수됨으로써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 도모
- 법은 법의 일관성을 통해 그 안정성이 보장될 때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보장됨
- 법이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 변경되면 국민이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될 것이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음
-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건
 - 첫째,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 둘째,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곤란
 - 셋째, 입법자의 자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
 - 넷째, 법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다섯째, 법은 시민들의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함

3) 사회질서의 유지

- 사회질서란 사회적인 과정이 일관성이 있고, 사회의 각 부분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 사회질서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사회복지법은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통제하고, 사회보장기관과 복지수혜자의 의무를 명시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

4) 합목적성(合目的性)

- 법은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함
- 법의 합목적성은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데 있음
 - 개인주의 : 다수의 이익으로부터 개인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
 - 단체주의 : 전체가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국가이익이 개인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문화주의 : 개인은 문화적 가치 실현에 봉사, 법과 국가는 문화에 봉사하는 것이 법의 목적
- 합목적성이란 현실의 사건을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합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하는 데 반하여 합목적성은 법을 개별화하는 경향을 가짐

5) 법이념의 해석 및 강조

- 법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비중을 달리함
- 자연법 시대에는 목적적 의미로서 정의의 이념이 강조됨
- 경찰국가 시대에는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적 의미로서 합목적성의 이념이 강조되고, 정의나 법적 안정성은 희생됨
- 법실증주의 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의나 합목적성을 소홀히 하게 됨
- 형법에서는 정의의 이념, 행정법에서는 합목적성, 민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강조됨

3.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이란?

- 법이 그 규범적 의미의 내용대로 실현되는가 하는 문제
-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 일반의 행태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법의 내용이 의미하는 대로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 법의 효력은 규범이 사실로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구(타당성)와 규범이 실제로 사실로서 행해지고 있다는 상태(실효성)가 결합되어 이루어짐

2) 법의 실질적 효력

- 법이 현실사회에서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적 타당성, 사실적 타당성, 안정성을 가져야 함
 - 법적 타당성 : 법률에 대한 의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실에서 법의 내용이 실현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규범의 객관적 당위성을 나타냄. 다만, 그러한 요구는 요구 자체로서 그치는 것이며, 그 이상의 구체화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법적 실효성 : 강제규범으로서 법이 규정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이 현실적으로 법규범이 의미하는 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
 - 법적 안정성 :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3) 법의 형식적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법의 유효기간)

① 법의 시행기간

-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의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이라 하고, 법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전 또는 그 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성문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립 후 공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공포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시행됨

- 법이 공포된 후 법의 존재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정 기간을 시행유예기간이라 함
- 시행기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② 법의 폐지

- 성문법은 폐지에 의해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됨
- 명시적 폐지
 - 첫째, 법이 미리 시행기간을 정하여 시행기간 만료로 법이 폐지되는 한시법
예) '긴급복지지원법'은 5년의 한시법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영속적인 법으로 바뀜
 - 둘째, 신법의 명시규정에 의해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된다고 정한 때에는 구법은 폐지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설 '생활보호법' 폐지, '국민건강보험법' 신설 '의료보험법' 폐지
- 묵시적 폐지
 - '신법은 구법을 개폐(改廢)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신법이 구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구법은 당연히 효력 상실

③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은 그 시행일로부터 폐지일에 이르기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단, 폐지된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권리는 신법의 시행으로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않음

(2) 사람에 관한 효력(효력이 누구에 대하여 미치는가)

① 속인주의

- 자기나라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국적을 표준으로 법령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
- 한 나라의 법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국 내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불문하고 자국민에 관한 사항이면 그들 모두에게 자기 나라 법령을 적용하는 원칙

② 속지주의

-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
- 한 나라의 법은 국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영토 내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그 영토 내에 있어서는 자국민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

③ 사회복지법

- 대부분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외국인의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거주국의 사회복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속지주의가 채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법의 분류체계 및 법원 / 1주차 2차시

1. 법의 일반적 체계

1) 자연법(自然法)

-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법
-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
-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되고 있음

2) 실정법

- 실증법(實證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超經驗的)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自然法)과 대립된 개념
-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법으로서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되어 옴
-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서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해당
- 실정법은 국가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 발전함
-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됨

(1) 국내법(國內法)

- 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법
- 국내법은 개인 자격으로서의 한 사람을 의미하는 사인(私人)과 사인 간, 사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공공단체 간, 공공단체와 공공단체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한 국가의 국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은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인데, 이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속함
- 국내법은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으로 세분화됨

(2) 국제법(國際法)

-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국제관습법으로 성립
-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그의 입법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함
-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국제관습법의 형태를 띠고 있음

2. 법원(法源)

-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의 축약어
- 넓은 의미는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을 의미하지만 보통 법의 존재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을 의미
-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됨
- 성문법이 모든 법률관계를 빠짐없이 규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문법 외에 관습법, 판례와 조리 등 불문법이 보충적 기능을 담당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1) 성문법(成文法)으로서의 법원

- 문자로 기록된 법으로서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제정 · 공포된 법
-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으며, 오늘날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이 해당됨
-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므로 내용이 명확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고정적이어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1) 헌법

- 헌법은 국가의 권력구조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기본법이자 최상위 규범
- 헌법은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됨
- 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이면서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중요
- 하위의 법체계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음
-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환경권 및 주거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및 보건권 등의 헌법규정은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최상위 규범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의미하며, 법률은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 형식을 가지므로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함

-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
-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적으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헌법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법률의 모든 제정 절차는 국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됨

(3) 명령

-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여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또는 장관령)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규명령이라고 하기도 함
-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규정은 명령에 위임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법원으로서 명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명령을 '위임명령'으로 불림
- 상위의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명령권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할 경우 '집행명령'이라고 불림
- 명령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명령은 보통 개별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이라는 존재양식으로서 표현되며, 여기에는 개별 법률의 실행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됨

(4) 자치법규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하여 재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위임 없이도 자치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음
-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음
-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① 조례

-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서 특정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기도 함
- ☞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규칙

- ☞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

2) 불문법(不文法)으로서의 법원

- 불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

(1) 관습법

- 사회적으로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
- 우리 대법원은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2) 판례법

-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됨

(3) 조리

-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하며,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

3.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은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 범위를 가지며, 특별법은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 범위를 갖는 법
- 법 적용의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 원칙으로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의 보충으로서 일반법을 적용
-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1)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 일반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
-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특별법

(2)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 일반법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만 특별법은 국토 내의 한정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
- 사회복지 관련 대부분의 법이 일반법이라면 서울특별시 복지관련 조례나 규칙과 같이 지방의회나 지방행정기관이 제정한 조례나 규칙은 특별법에 해당

(3) 사항을 표준으로 하는 구별

- 일반법은 일반적이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지만 특별법은 비교적 한정된 좁은 범위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
-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이라면,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

2) 상위법과 하위법

- 법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헌법이 최고 상위에 있고,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로 체계화됨
- 하위에 있는 규범이 상위의 규범을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이 되고, 법의 해석 역시 동일함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2주차 1차시

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의의

1) 일반적 정의

-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와 '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 사회복지란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노력을 말하고, 법이란 사회 속의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규범을 의미
-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만족스럽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에 관한 행위규범을 의미
- 좀 더 풀어쓰면,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

2) 형식적 의미 및 실질적 의미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성문법규를 의미
- 우리나라는 독일의 사회법전이나 우리의 민법전, 형법전과 같은 형식의 총괄 법전은 없지만 사회복지 관련 개별 실정법들이 있는 이상, 이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의미

3)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1) 협의의 사회복지법

-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법이 해당됨
-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은 가족이나 시장으로부터 탈락된 개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로 응급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충적 활동이 사회복지라고 간주함
- 정상적인 사회조직인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사회복지는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여기에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해당됨

(2) 광의의 사회복지법

- 월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법이 해당됨
- 제도적 개념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최일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봄
-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보다 많은 역할을 강조함
- 협의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서비스법, 공공부조법을 포함하여 사회보험법 및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을 포괄함

2.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

-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도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역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음

2) 클라이언트의 이익 우선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주요 책임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됨
-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의 가치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과 입양특례법 제4조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발견됨

3) 자기결정권

- 자기결정권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 이념을 담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3항에서는 '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비밀보장과 사생활 존중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에서도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차별의 금지

- 사회복지사는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및 표현, 결혼 여부, 정치적 신념,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 담긴 실천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묵인, 조장 또는 협조해서도 안 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역량강화 및 성실성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클라이언트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차별 금지와 함께 성실성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3.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1) 자치법규(조례, 규칙)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자치에 관한 규칙인 자치법규를 제정함

2) 조례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함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8조)
- 조례는 위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지방자치법 제30조)
-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가지고 있음. 즉, 조례는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조례도 제정)
- 조례는 법질서 유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기하고 있음
- 조례는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3) 규칙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지방자치법 제29조)
-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함
-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즉, 조례시행규칙 또는 조례운영규칙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둠.

사회복지의 권리성 / 2주차 2차시

1. 사회복지 기본권의 정의 및 특성

1) 기본권

-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에 갖는 권리인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
-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¹⁾, 천부적 권리, 자연권을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
- 유럽 국가들은 인권의 실정법주의를 택하여 인권이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을 보임
- 각국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참정권, 청구권, 생존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인권사상을 근거로 한 인간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기본권은 생래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었거나 구체화 됨

2) 기본권의 성격

(1) 주관적 공권

-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을 의미
- 주관적 공권에서 말하는 주관적 권리는 법질서가 개인에게 부여한 힘이라는 의미이고, 공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
- 따라서 주관적 공권은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말함

(2) 기본권 성격에 대한 3가지 입장

- 실정권설 :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창설된다는 입장
- 자연권설 : 기본권은 헌법 이전에 자연적 상태로 존재했다는 입장. 즉,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의미
- 기능론(통합설) : 기본권은 국가 이전에 존재(실정권설 부인)했으며, 그렇다고 자연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공감적 가치로 존재(자연권설 부인)
- 자연권은 생래적 권리 및 천부인권을 의미하며, 실정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

(3) 기본권의 이중성

-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이르는 말
- 이념상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방어권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기본권은 방어적 기능 외에도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1)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가지고 있는

3) 기본권의 제한

- 현대 국가에서는 비상시의 원활한 대처와 위기극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함
-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의미

2. 우리나라 사회권적 기본권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생존권)이라고도 함
- 사회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게 됨
- 바이마르헌법 제151조 :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2) 헌법상의 조항으로 본 기본권의 종류

(1) 포괄적 기본권

- 포괄적 기본권은 여타 기본권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존엄과 가치존중,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있음
- 인간존중과 가치존중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며, 어떤 경우라도 침해당하지 않을 기본적 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포괄적 기본권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

(2)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헌법 제11조)

(3) 자유권

-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누구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체의 자유권(헌법 제12조)
-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짐(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헌법 제16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짐(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짐(헌법 제20조)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짐(헌법 제21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짐(헌법 제22조)

(4) 경제권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헌법 제15조)

(5) 정치권

- 정치권은 참정권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헌법 제24조)

(6) 청구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짐(헌법 제26조)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헌법 제27조)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헌법 제29조)

3. 복지권 및 사회보장수급권

1) 복지권

- 기본권 중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아래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으로 분석됨
- 기본권 :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 복지권 :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2)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란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여와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도 있고, 그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음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음

(2) 사회보장수급권의 위치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 사회권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명시된 법적 용어이며, 외국에서는 복지권으로 사용되기도 함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는 권리이므로 개인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성격을 가지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애타할 수 없으며, 그대로 상속할 수도 없음

3) 사회보장수급권의 한계

- 사회보장수급권이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상 급여청구권이지만,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구빈의 관점에서 부여된 시혜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 때문에 권리로서 취약성을 가짐
-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이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가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급여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실현을 계량화하거나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기 곤란한 때가 있음
- 행정기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사회복지급여를 실현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급여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이 약한 경우가 있음

서구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 3주차 1차시

1. 시민법의 등장과 사회법의 발달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사상적 배경
-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 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함
-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러한 개인을 중요시 함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근대 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발상
-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화이며, 이러한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이러한 재화의 지배를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람들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소유권 인정

②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 개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
-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
- 시민 개인의 영리 추구와 자유권을 인정(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남)

③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해 그 행위가 위법할 경우뿐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

2) 사회법

(1) 사회법 등장배경

-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시민법 기본 원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 자본주의 발전은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 또는 노사의 대립을 초래하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킴
- 이런 상황에서 평등한 개인을 전제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의 불균등한 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정이 필요해짐

- 사회적 위험을 더 이상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수정이 필요해짐
- 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수정하여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적 입법이 형성됨에 따라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도 형성되기 시작

(2) 사회법의 기본원칙

- 소유권 행사의 제한 : 공공복리를 기준으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함
- 계약자유의 원칙 수정 :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공공복리, 질서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로 계약의 자유를 일부 제한
- 무과실 책임주의 : 시민법의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수정한 것으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가 누구의 과실로 인한 책임인가를 규명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과실 책임을 입증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하게 되기 때문

2.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 195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실제 내용 측면에서는 빈민구제와 보호보다는 빈민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법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강제노동(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강요)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원내구제 또는 자선원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 받음
 - 빈곤아동 : 강제도제(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보호)

2) 개정빈민법 이전

① 정주법

-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을 제정

② 길버트법

- 1782년 제정되었으며,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
- 교구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시도함
-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③ 스피햄랜드법

- 1975년 5월 스피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는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함
- 행정장관은 임금보충방안인 금여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교구는 뺑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까지 보충해주도록 함

3) 개정빈민법(1834년)

- 개정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판단
-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의 시도나 제도적인 빈곤구제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회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빈곤구제법
- 주요 원칙
 - 원외 구제의 원칙
 - 열등 처우의 원칙
 - 작업장 심사의 원칙
 - 전국균일처우의 원칙

4) 대처정부 이전까지

① 노령연금법

- 1908년 제정되었으며 빈곤이 증명되어야만 수급할 수 있는 무기여제도

② 국민보험법

- 1911년 제정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으로 영국 복지국가의 기원이 된 법
- 제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됨

③ 실업법

-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의 구제가 문제가 되자 영국 정부는 1934년 실업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를 새롭게 제정
-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

④ 가족수당법

- 1945년 제정되어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 중인 15~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비근로 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

⑤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1946년에 제정되었으며 균일하게 기여하고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받도록 규정

⑥ 국민보건서비스법

- 1946년 병원의 국영화, 병원종사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 간에 청부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제정됨

⑦ 국민부조법

- 1948년 이 법의 제정으로 빈민법은 350년만에 해체되고 국민 최저선이라는 이름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게 됨

3.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과정

1) 사회보험 입법의 배경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었음
-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시민혁명이 아닌 왕당파의 개혁을 통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였고, 주변국들에 비해 뒤늦게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전개됨
- 후방 산업국가인 독일은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지주 계급, 신흥 자본가 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 갈등이 전개됨
- 당시 집권자인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노동계급을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는 한시법을 통해 억압하는 동시에 경쟁계급인 자본가계급을 통제하고 노동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회보험입법을 추진
- 따라서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순수한 사회복지적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태동된 것

(2) 독일 사회보험법의 성격

- 전통적인 전제군주제에 위협요소로 등장한 신흥부르주아 계급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계급의 협조가 필요했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중심의 소득보장 전략인 사회보험을 선택함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초기 입법자들은 영국의 베버리지 계획이나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의 보편적 평등주의와 달리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조합주의적인 특성을 가짐
- 가부장적 전통과 독일 산업화의 반봉건적인 개입주의적 배경은 사회보험 분야에서 독일의 선구자적 역할을 촉진하였음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은 사회민주주의와 노조운동을 와해시키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조직의 강화를 초래하였음
- 1883년 의료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연금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으로서 적용대상이 임금수령자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중심의 사회보험체계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 다른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초석이 됨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입법과정 / 3주차 2차시

1.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회복지법 입법과정

1) 일제시대부터 미군정기

(1) 일제시대

- 일본에서 1929년 제정된 '구호법(救護法)'을 원용하여 조선에 1944년 3월 '조선구호령' 실시
-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이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됨

(2) 미군정기(1945.9.8. ~1948.8.15.)

- 형식상 일제시대의 제도 개선
- 당시 빈곤정책은 광범위한 요구호자들의 긴박한 필요에 대응하는 임시적인 구호사업 중심
- 미군정기 보건후생정책은 기아 예방, 최소한의 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 주택 공급 등
- 1946년 후생국보 3호,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 제정
- 65세 이상자, 6세 이하의 모, 13세 이하의 소아, 불치병자, 장애인,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으며, 노동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식량, 주택, 연료, 의류, 의료, 매장 등 지원

2) 1960년대

(1) 제3공화국 헌법(1962.12.26)부터 제5차 개정 헌법

- 제3공화국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 조항에 신설
- 동법 제3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2) 공무원연금법(1960.1.1 실시)

-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생활보호법(1961.12.30 제정)

-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였으나 이후 최저 생활의 보장과 자활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빈곤 구제 정책이 정착되고 공공부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계기가 됨

(4) 아동복리법(1961년 제정)

- '탁아소'를 법정 아동 복지 시설로 인정하기 시작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 기준, 보육 시간, 보호 내용 등 규정

(5)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1962년 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 제정)

(7)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 제정)

-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으로 폐지

(8) 의료보험법

- 1963년 제정되었으나 경제적, 기술적 여건의 미비로 실시되지 않다가 1977년 1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제 적용하기 시작

2.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회복지법 입법과정

1) 1970년대

(1) 사회복지사업법(1970.1.1 제정)

-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 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2)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제정)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연기되었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됨

(3) 의료보험법(1976.12 전부개정, 1977.1.1 시행)

- 공무원, 교직원, 군인을 제외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 대상으로 강제적용
- 사실상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됨
- 직장의료보험으로 도입되었고 농어촌지역 주민은 유보됨

(4) 의료보호법(1977.12.31 제정)

-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1979년 1월부터 실시

(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77.12.31 제정)

2) 1980년대

(1) 제5공화국 헌법(1980.10.27 제8차 개정헌법)

- 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운데 행복추구권 추가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를 별도로 추가하였음

(2) 아동복지법(1981.4.13 전부개정)

- 기존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됨
- 보호대상 범위가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되고, 어린이날을 제정
-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짐

(3) 심신장애인복지법(1981년 제정)

-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됨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신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됨

(4) 노인복지법(1981.6.5 제정)

- 1989.12.30.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함
-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5) 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5.21 일부개정)

-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함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

(6) 국민연금법(1986.12.31 전부개정)

-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부 개정하여 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년부터 본격 실시됨

(7) 최저임금법(1986.12.31 제정)

-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8) 의료보험법 개정

- 1988년 개정 :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실시
- 1989년 개정 : 도시지역 확대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확립됨

(9) 장애인복지법(1989.12.20 전부개정)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3) 1990년대

(1)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

-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여 국민복지증진의 토대를 마련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92.12.8 전부개정 :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 1997.8.22 전부개정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개인도 설치 및 운영 가능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제정)

- 생활보호법상의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를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

(4) 장애인복지법(1999.2.8 전부개정)

- 장애인의 정의 확대,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 확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 확대

(5) 국민의료보험법

- 1997년 제정 - 기존 의료보험법 폐지
- 1998년 10월 개정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에서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변경됨

(6)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

-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7) 기타 주요법률의 제정

- 영유아보육법(1991.1.14 제정)
-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 1995년부터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1994.1.5 제정)
- 정신보건법(1995.12.30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3.27 제정)

3.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입법과정

1) 아동복지법(2000.7.13. 전부개정)

-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신분 변경

2) 의료급여법(2001.10.1. 전부개정)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법명 변경
-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함

3) 모.부자복지법(2002.12.18. 개정)

-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확대

4) 장애인복지법(2003.9.29. 일부개정)

- 장애범주를 10개 범주에서 15개로 확대

5) 건강가정기본법(2004.2.9. 제정)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5.18. 제정)

7)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8.4. 제정)

8) 긴급복지지원법(2005.12.23. 제정)

-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지원.
- 2009년 5월 개정으로 한시법이라는 규정 삭제됨

9) 기초노령연금법(2007.4.25. 제정)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27. 제정)

11)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12) 장애인연금법(2010.4.12. 제정)

1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1.4. 제정)

14) 기초연금법(2014.5.20. 제정, 기존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12.30. 제정)

사회보장법의 개요 / 4주차 1차시

1. 사회보장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제1조)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이념(제2조)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득보장(제2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 등과 가정(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6) 국민의 책임(제7조)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외국인에 대한 적용(제8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회보장법의 입법 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성격의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했기 때문
- 당시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상태였으므로 경제개발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던 사회·경제적 분위기에서도 명문상으로나마 복지정책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음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당시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이 희박했던 상황 속에서 하향식으로 성립된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이 법률은 당초 사회보장의 기본 계획, 이론 정립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으려고 했으나 정부의 사회보장의 의지가 후퇴하면서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도로 입법화되는 수준에 그침

(2) 사회보장기본법

-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소위 '경제개발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그때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방편적이고 단속적으로 분립되어 실시되어 왔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 사회보장제도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제도 간 충돌과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의 부족, 제도 간 급여수준의 불균형성
 - 1990년대 초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천명하고, 1994년 11월 정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 199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되고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됨

(3) 연혁

- 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제정)
 - 전문 7개조만 있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상징적 의미 밖에 없음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함
- ②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 ③ 사회보장기본법 (2012.1.26. 전면 개정)
 - 종전의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하고, 사회보장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등을 새롭게 추가함
- ④ 사회보장기본법 (2015.12.29. 일부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됨

2)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 ·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 · 재정립됨
-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2) 특징

- 사회보장법은 다른 개별 사회복지법률들과 비교할 때 일반법에 해당하며,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률들이 우선 적용됨
- 향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함
-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함

3. 사회보장의 핵심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국가책임
- 생존권 보장
- 보충성
- 사회적 형평

(3) 공공부조의 특징

-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
- 공공부조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이며,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 수행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및 종류

- 사회보험은 생활하면서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시행하는 강제 보험을 총칭함
-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사회보험의 특징

-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어 역(逆)의 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음
- 사회보험은 일종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를 가짐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공적 보험
-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수혜대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충당됨
-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보편주의, 비용분담의 원칙이 적용됨

3)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의 경우 현금급여 또는 현물급여가 급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 반하여 사회서비스법은 상담, 재활, 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 · 사회심리적 · 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경우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수급권자를 처우할 수 있으나 사회서비스법은 서비스의 욕구 매우 다양하고, 대상자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나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우하기 어렵고, 수급권자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의 운영 / 4주차 2차시

1.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및 수급권자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복지권으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서비스수급권으로 구분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짐

2) 사회보장 급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11조)

-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청주의 원칙)
-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필요시 직권주의 병행)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12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제13조, 제14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 보편성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 형평성 :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 유지해야 함
- 민주성 :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시행
- 효율성 · 연계성 및 전문성 :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 공공성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협의 및 조정(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 비용의 부담(제28조)

- 사회보장이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장 전달체계(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기본계획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제17조, 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국내의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8조, 제17조)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제19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보장위원회(제20조, 제21조)

(1)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 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 · 조정사항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의 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사회보장통계
-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4)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제3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처리 ·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총괄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8조)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 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보장급여법의 기본 원리 / 5주차 1차시

1.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배경

1) 입법 배경

- 2014년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내게 됨
- 그 동안 복지예산과 서비스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전달체계가 중앙행정기관별 ·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됨
-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되어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의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
-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2) 법의 특징

-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를 담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루던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 지원, 상담 및 안내, 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사회보장정보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 도 사회보장위원회,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이 이 법으로 수정되어 이동하게 됨

2. 사회보장급여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1)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 규정
-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
-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

2) 기본원칙(제4조)

-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5조)

- 사회보장급여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따른다.
 -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제6조)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①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 ②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3) 수급자격의 조사(제7조)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②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③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제9조)

- 보장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보장기관의 장은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5) 지원대상자의 발굴

(1) 위기가구의 발굴(제9조의2)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위기ガ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 받은 정보와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
 - 자살자가 주소득자였던 가구
 -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한 위기ガ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및 처리 등

- ①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제10조)
 -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3)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제12조의2)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수급권자 등의 지원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15조)

- ①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 방법 · 수량 및 제공기간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기관 및 단체
 - 동일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방법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방법

(2)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 안내, 의뢰 등(제16조)

-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 · 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정보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 5주차 2차시

1. 사회보장정보 관리

1)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1)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제2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근거 법령, 보장대상 및 내용, 예산 등 사회보장급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상담, 신청, 조사 및 자격의 변동관리에 필요한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 ·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상담, 신청, 조사, 결정, 제공, 환수 등의 업무처리내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현황 및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 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제24조)

- 보장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제24조의2)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 민관협력 및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 통합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 · 기록 · 관리 업무

(4)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표준화

①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제2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제2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제29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 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 기능개선 · 관리 · 교육 · 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 ·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 · 분석, 제공
 -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

2)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 · 시행(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 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정보보호 교육(제31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제34조)

2.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35조)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해야 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 군 · 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제36조)

-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1) 시·도사회보장위원회(제40조)

- 시 · 도지사는 시 · 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 시 · 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 · 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 · 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 · 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 ·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시 · 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의 사람 중 시 ·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 자문한다.
 -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읍 · 면 · 동 단위로 읍 · 면 · 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 · 면 · 동에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3) 통합사례관리(제42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 · 복지 · 고용 ·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 · 군 · 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 6주차 1차시

1.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배경, 목적, 이념

1) 법의 입법배경

-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는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많은 사회문제 해결은 주로 외국에서 온 외원단체에 의존하였음
- 당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체계적이지 않은 채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국가의 관리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도시빈민 등 각종 사회문제가 양산됨에 따라 민간영역 사회복지시설이 더욱 확산되었고 설립기준, 절차, 자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1961년부터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 몇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나 사회복지 관계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음
-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됨

2) 법의 목적과 이념

(1) 법의 목적(제1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 도모
-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 법의 이념(제1조의2)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과정

- 1) 1970년 1월 1일 제정, 4월 시행
- 2) 1983년 5월 21일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 3) 1992년 12월 8일 개정
 -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시 · 군 · 구에 복지전담기구 설치
- 4) 1997년 8월 22일 개정
 -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부여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5) 2003년 7월 30일 일부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시행
- 6) 2007년 12월 14일 일부개정
 - 의료급여법 추가
- 7) 2009년 6월 9일 일부개정
 -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추가
 -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전산망 마련
- 8) 2010년 4월 12일 일부개정
 - 장애인연금법 추가
- 9) 2010년 4월 15일 일부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
- 10) 2011년 1월 4일 일부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 11) 2011년 8월 4일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추가
- 12) 2012년 1월 26일 일부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추가
 -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
- 13)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 14)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 15) 2016년 2월 3일 일부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추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

16) 2017년 10월 24일 일부개정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 공표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함

17) 2018년 12월 11일 일부개정

- 정신건강 · 의료 · 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4조)

-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인권 옹호할 책임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제공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 강화
-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 마련 책임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노력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신속한 구제조치 마련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제5조의2)

-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한 시책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환경, 인력의 전문성 등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4.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제11조)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 · 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 · 의료 · 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 아닌 경우(시행령 제6조 제2항)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6주차 2차시

1.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및 설립조건

1) 법인의 설립허가

① 허가(제16조)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시행규칙 제7조)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서) 1부
- 재산의 수익조서(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정관(제17조)

-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원의 구성 및 요건

① 구성(제18조)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요건(제20조~제21조)

- 임원의 보충 :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 겸직 금지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4) 재산 등(제23조)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5) 남은 재산의 처리(제27조)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6) 수익사업(제28조)

-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시설의 설치(제3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 의무(제34조의3)

-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등(제34조의4)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관의 설치(제34의5조)

-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시설의 장과 종사자(제35조)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6) 운영위원회(제36조)

-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제41조)

-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 법정단체의 종류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 · 도 단위의 시 · 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 군 · 구 단위의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 · 군 · 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 · 단체 간의 연계 · 협력 · 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 협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중앙협의회, 시 · 도협의회 및 시 · 군 · 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 7주차 1차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의의

1) 목적(제1조)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①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또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함
- 공공부조 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로 인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②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③ 종합적 빈곤대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자립 및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기존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18세 미만 65세 이상)을 폐지하고,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는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함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부(근로와 연계하여)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 수행

3) 용어 정의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

4)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제6조의 2)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6) 연혁

- 2005.12.23 일부 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를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 2006.12.28 일부 개정
 -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등 부분 급여 지급
 - 중앙자활센터 설치,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변경
- 2012.02.01 일부 개정
 - 중앙자활센터 기본 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조항 추가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취소, 수행사업 내용, 경비보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그 설립조건을 2인 이상 공동 창업에서 1인으로 완화
- 2019.01.15 일부 개정
 -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중앙자활센터의 명칭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둠

2. 수급자 종류, 수급자 선정기준

1) 수급권자

(1) 정의(제2조)

-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5조의2)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3)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한다.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다.

2) 조건부수급자(시행령 제8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조건부수급자)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조건 부과를 유예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는다.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취학 자녀, 질병 ·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원격대학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① 급여 변경의 금지(제34조)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압류금지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양도금지(제36조)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이의 신청

- 시 ·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제38조)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의 처분(제39조)
 - 시 · 도지사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40조)
 -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제41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벌칙 등

- 금융정보 등을 사용 ·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제1항)
-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제49조)
 - 대리수령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제49조)
 -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의2).
 -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 7주차 2차시

1. 급여의 원칙, 기준, 종류

1)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2) 급여의 기준(제4조)

-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급여의 종류(제7조)

-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자활급여까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③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⑤ 해산급여

-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장제급여

-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돋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2.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제21조)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급여신청을 할 때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에 의한 조사(제2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3) 확인조사(제23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4) 급여의 지급방법(제27조의2)

-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 급여의 대리수령 등(제27조의3)

-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배우자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3.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한다.

2) 생활보장위원회(제20조)

-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3)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20조의2)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등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 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 공표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 9주차 1차시

1. 의료급여법의 목적, 의의, 특징

1) 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 제공

2) 의의

-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특징

-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에 해당된다.
-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기여한다.
-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4) 용어의 정의

- 수급권자 :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가구 :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을 가구를 말하며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성되며, 타법 수급자 가구는 당사자(당사자 사망으로 선순위 유족에게 수권이 승계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가 가구주이어야 함
-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하며, 의료급여 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상급종합병원급)으로 구분

2. 의료급여 수급권자

1) 수급권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④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⑦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⑧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⑩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의료급여 종류 및 실시기관

1) 지원 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①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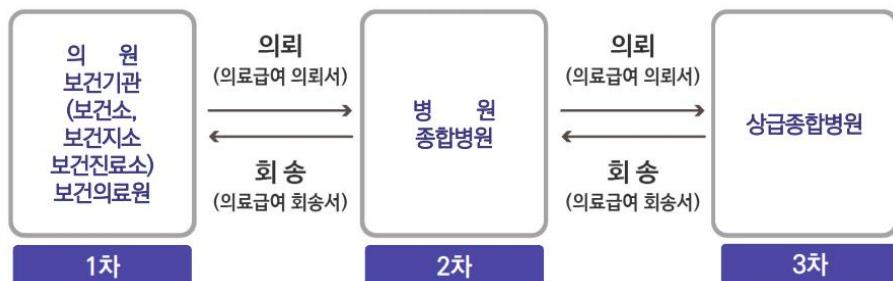
②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2) 급여기준

- ① 급여내용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 ②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③ 급여절차 : 3단계



출처: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 ④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출처: 2023 의료급여사업안내

3) 지원내용

(1) 의료급여의 내용(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의함

4) 의료급여기관의 유형

① 제1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②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③ 제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5)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 13])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원본 제출)

긴급복지지원법 / 9주차 2차시

1.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의의, 원칙, 대상자

1) 목적

-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의

-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함

3)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단기 지원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연장 2개월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 추가연장 가능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하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 불가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의료지원	1회		1회 추가연장
교육지원	1회(분기)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분기)까지 추가연장 가능

출처: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3개월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한 경우
 - 의료지원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도 지원 가능하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에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추가하여 복합지원 가능
 - 시·군·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기상황 중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타 법률 중복지지원 금지의 원칙(제3조제2항)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4)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료·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

4) 대상자

(1)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① 위기상황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출처: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재산 기준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금융재산 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출처: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지원의 종류

(1) 생계지원 (법시행령 제2조)

- 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출처: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2) 의료지원 (시행령 제3조)

- 지원 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 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

(3) 주거지원 (법 시행령 제4조)

- 지원 대상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방법 및 절차 :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행령 제5조)

- 지원 대상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방법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5) 교육지원 (시행령 제5조2)

- 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제외)
- 지원원칙 : 금전 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금전 지급 예외 :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

(6) 그 밖의 지원 (시행령 제6조)

- 지원 대상자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 긴급지원의 체계

(1) 긴급지원의 체계

- 긴급지원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요청·신고 시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사후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긴급지원 담당기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상담·정보 제공, 지원요청·신고의 이관,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 : 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2)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지정(제6조제3항)

-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
- 복지 관련 교육훈련: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관련 교육” 또는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 관련 교육”을 담당 공무원 지정 전 3년 내에 10시간 이상 이수. 단, 불가피한 경우 발령 후 3개월 내에 필수 이수

국민연금법 / 10주차 1차시

1. 국민연금법의 목적, 특징, 국가의 책임

1)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특수-공법인에 속한다.

2) 특징

(1) 국가 관장 원리

- 연금제도의 관리 및 운영은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

(2) 강제가입 및 위험분산

- 사회적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역의 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보험과 달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나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한다.

(3) 소득재분배

- 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의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함으로써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의 가입세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 일부 세대 내 재분배 기능도 하지만 매우 미약하며, 주로 세대 간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 급여의 산정 시 '평균소득월액'을 통해 실현된다.

(4) 수정적립방식

-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수정적립방식이다.
- 이 방식은 제도의 도입 초기에 불충분한 재정구조에 따른 '저 부담-고 급여'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한 뒤,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다.

3)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2.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1) 가입자의 종류

(1)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4)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될 때 또는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된 때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그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끝난 때, 60세가 된 때,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을 상실한다.
-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가 된 때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60세가 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자격을 상실한다.

3.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 ~ 1956년	1957 ~ 1960년	1961 ~ 1964년	1965 ~ 1968년	1969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2) 노령연금의 종류

- ①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
- ②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 ③ 분할연금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가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초진일 경우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3)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된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5)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4. 비용부담 및 가입기간

1)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2)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 10주차 2차시

1. 기초연금의 목적, 지급대상, 급여액 결정

1)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지급대상(수급권자)

-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인 자
- (2)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출처: 출처: 2023 기초연금 사업안내

-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3)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3) 기초연금액 산정

(1) 기초연금액 산정

-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

구 분	2023년	비고
기준 연금액	10%	32,318원 최저연금액
	50%	161,590원 부가연금액
	100%	323,180원 기준연금액
	150%	484,770원
	200%	646,360원
	250%	807,950원

출처: 2023 기초연금 사업안내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하는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산정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이하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 \text{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 2023년 1월~12월 월 323,180원, 부가연금액 : 2023년 1월~12월 월 161,590원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연계퇴직연금액의 } 1/2) \} + \text{부가연금액}$$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2) 기초연금액 감액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2. 장애연금의 목적, 수급자 범위, 연금 신청 및 종류

1)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장애인연금법」 제1조)

2) 수급자 범위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 \boxed{\quad}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 - \\ & 2,000만원^4) - (부채)] \times 재산의 \\ & 소득환산율(연 4%) \div 12개월] + \\ & (\text{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 = (\text{상시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공제}^1) + (\text{기타 월소득 합계}^2) \end{aligned}$$

- 주) 1.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3) 연금의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23년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부가급여액(만 18세 이상) : 2023년 20,000원~403,180원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403,180원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원	7만원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만원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출처: 2023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4) 연금의 신청

-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가능자)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 (지급계좌)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3) 신청접수기관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읍·면·동에서는 구비 서류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건강보험법 / 11주차 1차시

1. 건강보험법의 목적, 원칙, 적용대상자

1) 건강보험법의 목적

-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강보험법의 원칙

①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한다.

-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②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③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④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⑤ 보험제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저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하도록 한다.

3) 특징

(1) 강제가입

-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한 의료비 해결 목적 실현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강제가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부여

(2) 차등 부과

- 사회보험은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하는 제도
- 소득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의 차등부과
- 민간 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차이

(3) 균등수혜

- 보험료 부담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적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

(4) 단기보험

- 1년 단위 회계연도 운영

(5) 국가책임

-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일종
- 사회보장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
- 전체 국민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강제를 위하여 국가관리

4) 적용대상자

(1)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 전환복무된 자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3)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5)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자격의 취득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자격상실의 시기

-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등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보험료, 보장기관

1)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1)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선별급여

-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급여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요양기관

-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은 제외)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5) 비용의 일부부담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 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2) 보험료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09%(2023년, 2024년)
-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매년 변동) : 205.3원(2023년)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보험료의 면제 및 경감

-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3개월 이상으로 한정)',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인 경우, 교도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 섬·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3) 보장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의 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 위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기타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1주차 2차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3)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4)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단기보호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섬·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5)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 시·군·구청장의 지정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6)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대비 0.9082%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국가, 지방자치단체)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7) 장기요양기본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급자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갱신, 변경 등

(1) 유효기간

-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으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기관

1) 급여종류

(1) 재가급여

-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⑥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급급여

- ① 가족요양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한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①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②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 12주차 1차시

1. 고용보험법의 목적, 특징, 연혁, 가입대상

1) 고용보험법의 의의

-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특징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여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훈련을 실시하여 성장산업 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인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한다.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고용보험제도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4)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 고용보험제도는 경기불황기에 실업자가 증가하면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여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줄여준다.
- 경기 호황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여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고용보험법의 주요 연혁

- 1993년 12월 : 고용보험법 제정
- 1995년 7월 : 고용보험법 시행
- 1998년 10월 : 1인 이상 전 사업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
- 2001년 11월 : 고용보험을 통해 보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2011년 9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 2012년 1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2013년 6월 :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2016년 5월 :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

2. 고용보험법의 핵심내용(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조정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 ·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 ·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7)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 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2) 구직급여

① 구직급여 수급요건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한다.

②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④ 구직급여일액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⑤ 취업 등의 신고

-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수급기간 및 일수와 대기기간

- 실업이 인정되더라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개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하다.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4)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한다.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육아휴식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출산전후휴가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3)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산재보험 / 12주차 2차시

1. 산재보험의 배경, 목적, 특징, 타 법률과의 관계

1) 산재보험의 배경

- 산재보험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서구에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 한국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여겨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시된 다음 해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산재보험제도가 산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당시 노동자단체나 경제단체 등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산재보험의 도입을 요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즉 산재보험의 도입 결정과정에 사용자단체나 노동자 단체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다만 이들에게 사업 계획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만 했을 뿐이었다.

2) 산재보험의 목적

-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재보험법은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위험분산에 의해 산재보험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의의가 있다.
-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3) 산재보험의 특징

- (1)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 (2)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영화되어 있다.
- (3)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 (4)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 (5)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 (6)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대응적이다.

4) 타 법률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보험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다.
- 보험급여는 양자가 유사하나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일시금 이외에 연금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책임보험의 성격 상 원칙적으로 소요비용 전액을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다.

(3)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연금,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업무상 재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1)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사고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봄

(2) 업무상 질병

-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1) 적용사업

- 당연적용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즉,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적용제외 사업 :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보험가입자

① 당연가입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임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도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산재보험의 급여

(1)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2) 휴업급여

-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4)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6)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 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7) 장례비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8) 직업재활급여 및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 13주차 1차시

1. 노인복지법의 목적, 이념, 보건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 목적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념

- (노후생활보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사회발전에 기여)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 ① 노인인력 개발기관 : 노인일자리개발 ·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②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 지원, 창업 ·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③ 노인취업알선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3) 생산품 우선구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경로우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5) 독거노인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종류	시설	설치목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 유지·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2. 노인학대 예방조치

1) 긴급전화의 설치

-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3)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 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의 목적, 이념,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 아동복지시설

1)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시설
-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4. 아동학대 예방조치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13주차 2차시

1.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장애인 복지조치 및 시설

1)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 장애인은 국가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장애인 차별 금지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복지조치 및 시설

(1) 장애인 복지조치

① (장애발생 예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예의 접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편의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 인식개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회경제적 지원

- ① 자녀 교육비 지원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금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③ 생산품 구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장애수당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장애아동수당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호수당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장애인 복지시설

- ①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수급자

(1) 지원대상자

-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법에서 정하는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 등이 해당),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4) 조손가정에 대한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③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④ 출산지원시설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의 임신 · 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⑤ 생활지원시설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⑥ 일시지원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⑦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 · 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요 서비스

- 복지자금의 대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 고용촉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족지원서비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14주차 1차시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기준, 어린이집 운영

1) 어린이집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 · 단체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기준

(1) 어린이집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3)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4)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3) 어린이집의 운영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그 형제자매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등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2.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1) 국가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시 · 도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 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관할 시 · 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3)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의 수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
- 정신질환자의 취업 · 직업훈련 · 소득 · 주거 · 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 · 경제적 상황
-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1)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2) 국립·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 생활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재활훈련시설 :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보호 및 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2) 다문화가족 보호 및 지원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2)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5)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 판례 / 14주차 2차시

1. 판례의 개념 및 의의

1) 판례의 개념

- 판례(判例)란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한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결로서의 선례를 뜻한다.
- 판례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 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화 되지 아니한 법이다.
- 사법부의 역할은 법을 해석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법률효과의 부여)을 내리는 것이다.

2) 판례의 특성

- 모든 사안들은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 역시 매번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사안들이 일종의 군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의 법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특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종국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에서 동일한 법해석이 반복되어 판례를 형성하게 되면 '사실상의 강제력'이 발생한다.
- 판례에는 법률상의 강제력이 아닌, 오직 사실상의 강제력만이 부여된다.
- 헌법에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법관들 개개인에게 부여하고 있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일반 법관들에게 자신의 법해석을 강요할 수 없다.
- 다만, 현실적으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만든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법관들이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일컬어 '사실상의 강제력'이라고 말한다.

3) 판례의 의의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판례집을 공개함으로써 하급심 법원은 물론 국가와 일반국민들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판례는 공익소송적인 의미를 갖는다. 공익소송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 사회복지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 사회보험법 관련 판례

제목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1) 사건개요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2) 판결요지

- 구 국민연금법과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공공부조법 관련 판례

제목 :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1) 사건개요

-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던 A씨는 2016년 3월 구청에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구청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A씨는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학업을 병행해 나가기 어렵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2) 판결요지

- 현재는 로스쿨 준비생이던 A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대학원생'을 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령기 이하의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빈곤 여성 등 사정상 당장 탈수급이 어려운 근로능력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들을 '조건부과 유예자'라 부른다.
- 현재는 "대학 중에는 졸업 후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곳이 있지만, 대학원은 대학 졸업생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현재는 "수급자가 자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돋는 생계급여 제도의 취지와 생계급여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4. 사회서비스법 관련 판례

1)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1) 사건개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 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 장애인활동법 상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급여는 서로 취지를 달리하며, 급여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 수급액 편차까지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에 의하여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었다.
- 이 결정은 심판대상의 이러한 신청자격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선언한 것으로, 다만 양 급여의 수급대상 중복에 따른 중복급여의 문제나 급여 구분 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해소방식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2) 간호사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사건

(1) 사건개요

-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간호사가 진료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진료를 위해 왕진 요청을 받아 진료기록부상 일반적인 반복처방이 시행된 재진일에는 간호사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도록 했다.
- 간호사는 전화로 의사에게 환자 상태 등을 보고하고 구두 지시에 따라 처치 등의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이에 피고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33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104일 처분을 통보했다.

(2) 판결요지

-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외부에 진료를 나가도록 한 후 간호사와의 전화통화로 전해들은 간접 정보를 근거로 진찰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 따라서 원고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 이상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지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부당청구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사회복지법인 관련 판례

제목 : 사회복지법인 배임수재

(1) 사건개요

- 양수인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대가로 양수인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는 '청탁'이 배임죄 성립요건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양도수익금의 수수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추상적인 위험만 안고 운영권 양도계약으로 양도대금을 받는 것은 형법원칙 및 형법명시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대가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금을 받는 경우라도 그 청탁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입·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는 한 그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 성립 요건인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금을 받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받은 사실 등의 사정은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